#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96

발의연월일: 2021. 11. 12.

발 의 자:배진교·강은미·김홍걸

류호정 · 민형배 · 심상정

양정숙 • 이은주 • 장혜영

허종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 (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게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어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하여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여 군 내에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 등 군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군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하고,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군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군인등", "군인권침해등"에 대하여 정의하여 장교·준사관·부사 관·병(兵),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 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부터 제8호까지 신설).
- 나.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에게 통보받은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 다. 위원회가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 라.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위하여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 (안 제48조제1항).
- 마.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등의 예방 및 군인권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 바.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위 원회를 둠(안 제50조의3 신설).
- 사.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등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5 신설).
- 아.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사망의 원인이 명백 히 자연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진행 중인 해당 사건 관련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제50조의7 신설).
- 자. 군인권침해등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각하 및 조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50조의8 및 제50조의9 신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
  -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 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군무원
- 7. "군인권침해등"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 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3명"을 "4명"으로,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4명"을 "5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명"을 "5명"으로, "1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 중 1명은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지명한다.

제24조제1항 중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로 한다.

제2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중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권 침해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5항까지를"을 "제6항까지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면 그"를 "인정하면 즉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로 한다.

제4장의2(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6) 및 제4장의3(제50조의7부터 제5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①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 ②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등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업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업무는 제외한다)를 총괄한다.
  - ③ 군인권보호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예방 및 군인 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 회를 둔다.
  - ②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군인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군인권보호위원장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⑤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 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그 밖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구성,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두는 지원조직과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50조의4(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의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의 개시,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사무는 군인권보호관에게 위임한다.
  - 1.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2. 군인권침해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 3.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개시
  - 4. 군인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5.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
  - 6. 군인권침해등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7.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 8. 군인권침해등의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 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9. 그 밖에 군인권침해등의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위 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50조의5(군부대 방문조사) ①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예 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할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및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 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다.

- ⑥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군부대의 직원 및 소속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 술하게 할 수 있다.
- ①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의6(준용규정)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한다.

제4장의3 군인권침해등 사건의 조사 등에 관한 특례

- 제50조의7(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 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자연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당 사건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인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입회가 진행 중인 조사 또는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의8(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사건

과 관련된 진정으로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 ②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의9(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군인권침해등 사건 조사를 위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이하 "자료제출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등의 장 또는 관계인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

제50조의10(준용규정) 군인권침해등 사건의 조사 등에 관하여 이 장에

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4장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정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전에 발생한 군인권침해등 사건으로서 진정의 원인이 된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하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심의·의결절 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 제4조(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지명할 당시 제5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u>말한다.</u>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군인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
	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군무원
<u>&lt;신 설&gt;</u>	7. "군인권침해등"이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
	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
	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u>말한다.</u>
<u>&lt;신 설&gt;</u>	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저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u>3명</u>을 포함한 <u>11명</u>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국회가 선출하는 <u>4명</u>(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 2. 대통령이 지명하는 <u>4명</u>(상임 위원 <u>1명</u>을 포함한다) <u><후단</u> 신설>
- 3. (생략)
- ③ ~ ⑧ (생 략)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 위원 지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
호관을 말한다.
세5조(위원회의 구성) ①
<u>4명</u> -
<u>13명</u>
<u>.</u>
②
1 <u>5명</u>
2 <u>5명</u>
<u>2명</u> <u>이 경</u>
우 상임위원 중 1명은 제50조
의2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
관으로 지정하여 지명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데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군
인권보호위원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 ⑤ (생 략)

<u><신</u>설>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 ④ (생 략) <신 설>

⑤・⑥ (생 략)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 저 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 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2	조(	정책과	관	행의	개	선	또	는
시기	엉	권고)	1	~	5	(현	. 행	과
같음	읔)							
	Ò,	1 이 뒤 ㄴ	ار-	しつそ)	رام	rr] ¬	ו	E

-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통 지받은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는 군 내 인권을 개 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 과 협의할 수 있다.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
조) ①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권침 해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 는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생 략)
-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u>제5항까지를</u> 준용한다.
-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 6. (생 략)
  -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인정하면 즉
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u>.</u>
· 1. ~ 6.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
권보호위원회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① 군인
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 ②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등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업무는 제외한다)를 총괄한다.
- ③ 군인권보호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둔다.
  - ②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 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 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하여 3 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군인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군인권보호위원장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무성,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두는 지원조직과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 의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

제50조의4(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음 기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의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의 개시, 제5호, 제6호, 제8호및 제9호의 사무는 군인권보호관에게 위임한다.

칙으로 정한다.

1.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법령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

- 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2. 군인권침해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 3.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 사 개시
- 4. 군인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5.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
- 6. 군인권침해등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7.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u>협</u> 조
- 8. 군인권침해등의 예방과 군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 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 과의 협력
- 9. 그 밖에 군인권침해등의 예 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 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0조의5(군부대 방문조사) ①

<신 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침 해등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 호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 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 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 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 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u>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u> 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 하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대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대 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 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및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 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군 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과 조사 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군부대의 직원

<신 설>

<신 설>

및 소속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6(준용규정) 군인권보호 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 무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한다.

제4장의3 군인권침해등 사건의 조사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의7(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경우(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자연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기관 또 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진행 중 인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

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입 회가 진행 중인 조사 또는 수 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 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의8(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등 사건과 관련된 진정으로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 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 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등 사 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 구하고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회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신 설>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 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9(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 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 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군인권침해등 사 건 조사를 위하여 자료나 물건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 사 또는 감정(이하 "자료제출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등의 장 또 는 관계인은 성실히 협조하여 야 하며,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나 계속 중 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자료제 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

제50조의10(준용규정) 군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등에 관하여

<u>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u> <u>하고는 제4장을 준용한다.</u>